

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11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.
 - 1)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
 - 2)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 경우
 - 3)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

2. 개별기준

- 가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
 - 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)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
 - 나)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
 - 다)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
 - 2)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3) 법에 따라 인가·승인 등을 받아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인가·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·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
- 나.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위법·부당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2)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다. 경고 또는 주의
 -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위반행위가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경영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
 - 2) 위반행위를 한 동기·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